

자영업자도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노동자다

자영업자들이 그들의 업무활동 중에 잠재적인 안전보건상의 유해 위험요인이 있을 때 사업주는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를 수립할 책임이 있으며, 근로자는 안전보건관리체제 내에서 근로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이 권고할 수 있다.



유럽연합의 직업안전보건에 대한 2007~2012 지역사회 전략에서,
중요한 직업안전보건 도전과제로 ‘자영업자’를 지목한 바 있다.
이 이슈는 자영업자(Self-employed)와 임금근로자(Employee) 간의 구별이
점차 모호해져 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박정선

대한산업보건협회 울산산업보건센터 보건관리팀 원장
대구가톨릭대학교 산업보건학과 석좌교수

유럽연합의 직업안전보건에 대한 2007~2012 지역사회 전략에서, 중요한 직업안전보건 도전과제로 ‘자영업자’를 지목한 바 있다. 이 이슈는 첫 번째 지역사회 전략백서(2002~2006)에서 최초로 알려진 것으로, 백서에는 자영업자(Self-employed)와 임금근로자(Employee) 간의 구별이 점차 모호해져 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예: 재택근무자). 이 이슈는 자영업자들이 일터에서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더욱 잘 보호하도록 하기 위해 유럽의회 권고 2003/134/EC를 통해 다루어졌다. 이 의회 권고에서는 다음 두 가지 대상을 핵심 도전과제로 정한 바 있다.

첫째, 직업안전보건에 대한 연방 명령 범주를 크게 벗어난 수많은 취업자들과 특정 회원국가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보호되지 않는 근로자.

둘째, 농업, 어업, 건설업 및 운수업과 같은 특정 고위험 업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이들은 낮은 임금, 기술 부족, 장시간 및 불규칙적인 근무가 특징임).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숫자상으로
약 4백만 정도에
이르러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규모라 할 수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1988년에 전체 취업자의 24.1%를 차지하다가 2016년에는 15.3%로 조사되어 그 비중이 많이 줄어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숫자상으로는 약 4백만 정도(남자 약 283만 명, 여자 약 120만 명)에 이르러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규모라 할 수 있다.

필자는 한국의 취업자들 즉,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및 사업주의 근로시간을 비교 분석해본 적이 있는데 자영업자들이 임금근로자에 비해 훨씬 장시간 근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Park et al, 2017). 이러한 결과가 자영업자는 임금근로자와 달리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일 수 있겠다는 점에 착안하여 산업안전보건법도 적용받지 않는 자영업자의 산업안전보건 실태가 매우 궁극해졌다. 그러나 지금까지 자영업자의 산업안전보건 실태나 건강 관련 실태를 별도로 조사하거나 분석하여 발표한 보고서는 없었다.

그래서 최근 필자는 취업자 근로환경조사 DB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현재 직업을 정신노동군, 육체노동군, 감정노동군 등 세 그룹으로 나눈 후 그들의 업무적 유해요인 노출 특성, 여러 신체증상들, 주관적 건강 상태 및 정신적 웰빙 상태를 비교 분석해 보았으며(Park et al, 2018), 그 결과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가 자영업자 중 가장 분포가 큰 직업이다.
- 자영업자 중 남자는 '육체노동'에, 여자는 '감정노동'에 더 많이 종사하고 있다.
- 자영업자들은 매우 이질적인 세부 직업을 가진 자의 집단으로 하나의 특성으로 일반화하기가 어렵다. 즉 정신노동군은 교육수준이 높고, 소득수준이 높으며, 물리적/화학적/인간공학적인 유해요인에 덜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안정된 직업을 가진 전문직으로 간주되는 반면에 육체노동군은 나이가 많고, 교육수준이 낮으며, 소득수준이 낮고 물리적/화학적/인간공학적인 유해요인에 더 많이 노출된다. 또한, 건강 문제도 많고, 정신적 웰빙 수준이 낮으며, 자가 건강평가는 '나쁨'으로 응답하여 산업안전보건 문제에 가장 취약하고 불안정한 직업을 가진 육체노동자로 간주되었다. 감정노동군은 근로조건이나 산업보건 이슈에 있어 정신노동군과 육체노동군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지만 근로시간은 가장 장시간으로 나타났다.
- 연구결과를 종합하자면,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안전보건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육체노동군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자영업자들은 이질적인 집단이라는 것이 이 연구를 통해 아주 잘 드러나고 있다. 자영업자를 동질적인 그룹으로 간주하고 자영업자가 아닌 그룹과 비교 연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질적인 집단의 집합체라는 개념으로 연구를 해야 실체에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제6차 유럽근로환경조사를 통해서도 밝혀진 바가 있다. 이 조사 보고서에서 '자영업자가 되는 이유'는 한 나라의 전체 경제상황과 고용 기회를 반영해 준다고 하였다. 즉, 자영업자는 대개 전문직(76%), 관리자(68%), 기술직(65%)에 대한 개인적 선호와 보건 업종(76%), 교육(65%), 기타 서비스(64%) 및 금융서비스(63%)에 대한 개인적 선호에 의해 선택한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단순노무직(42%), 농사(26%)나 운송(24%) 및 건설(20%)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는 '다른 일을 선택할 여지가 없어서'라고 응답하고 있어 매우 이질적인 그룹이라는 것이다.

한국에서 자영업자는 근로자이기보다는 사업주로 간주되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의 강제 적용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필자가 앞에서 소개한 연구결과와 문헌을 볼 때 특히 육체노동을 하는 자영업자는 노동자로 간주되어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사업주와 근로자 특성을 다 가지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그들의 업무활동 중에 잠재적인 안전보건상의 유해 위험요인이 있을 때 사업주로서는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를 수립할 책임이 있으며, 근로자로서는 안전보건관리체제 내에서 근로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이 권고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은 사후 처벌이 아니라 사전 예방에 있으며, 사전 예방을 하기 위해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최소한의 내용을 담은 것이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전 예방에 목적이 있다.
예방을 위해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최소한의 내용을
담은 것이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1. European Agency for Safety and Health at Work, European Risk Observatory Report, A review of methods used across Europe to estimate work-related accidents and illnesses among the self-employed. ISSN 1831-9343. 2010.
2. Jungsun Park, Yangho Kim, Boyoung Han, Long Working Hours in Korea: Based on the 2014 Kor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Saf Health Work 2017; 8: 343-346.
3. Jungsun Park, Boyoung Han, Yangho Kim, Self-employed individuals performing different types of work have different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problems. Am J Ind Med 2018. DOI: 10.1002/ajim.22862.